



제 438국회 (임시회)
제 2차 정무위원회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조사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전문가 포함〉
■ 이양수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7850호)

2026. 8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곽현준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 : 이양수의원 등 11인

나. 제 안 일 : 2026. 3. 30.

다. 회 부 일 : 2026. 3. 3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가 항공·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보다 객관적·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음.

그런데,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,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,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, 이러한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‘셀프조사’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항공·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조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).

현 행	개정안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.	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위원(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)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상임위원의 <u>직급에 관하여는</u>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③ ----- <u>직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 은-----.

- 현행법은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·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¹⁾하고 있음.

-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,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²⁾은 대통령

1)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이 법 시행령에서는 위원회에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되, 각 분과위원회에는 상임위원 각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 임명하며,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³⁾함.

○ 참고로, 기존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고 있었으나,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 이후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.

-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에 착륙기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고, 활주 중 활주로를 초과하였으며, 방위각(Localizer⁴⁾) 시설물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.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.
- 동 사고에 대하여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에 착수하였으나, 해당 위원회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셀프조사는 지적⁵⁾이 제기되고 있고, 지난 2025. 1. 14.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사고 피해자 가족 대표는 사고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하기도 하였음.

3)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6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.

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,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.

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

5) 동아일보,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“국토부 책임 의혹…셀프 조사 못 믿어”, 2025.1.4.

<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50104/130788002/2>

SBS뉴스, “결과 못 믿겠다” 유족들 반발…‘셀프 조사’ 논란된 이유, 2025.1.7.
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937928&plink=ORI&cooper=NAVER

- 이에 국회는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「항공철도사고조사법」 개정안을 2026. 1. 15.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, 이후 공포(2026. 1. 27.) 및 시행(2026. 2. 28.)되었음.

□ 개정안은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○ 일반적으로 국회가 행정부 등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경우 그 방식은 ① 국회 선출·추천, ②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, ③ 국회의장 추천 등이 있으며⁶⁾, 이 중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.

- 참고로, 우리 위원회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입법례로는 「한국산업은행법」 상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⁷⁾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⁸⁾, 「공적자금관리 특별법」 상 공적자금관리위원회⁹⁾ 등이

6) 국회사무처(법제실), 법제기준과 실제, 2024

7) 「한국산업은행법」 제29조의6(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)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.

1.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기본정책

2.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는 금융·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(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8) 「한국산업은행법」 제29조의11(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)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.

1.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.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

있음.

- 아울러,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객관성·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한 만큼,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위촉할 경우 사고조사의 객관성, 민주성 및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기대됨.

□ 다만, 항공·철도 사고조사는 정치·사회적 고려나 균형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분석과 과학적 추론에 기반한 결과 도출이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에서,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는 타 위원회와는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, 최근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의견도 함께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-
- 3.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·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(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)으로 구성한다.
 -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9) 「공적자금관리 특별법」 제4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1. 금융위원회 위원장 2.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
 - 3.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
 - 4.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
 - 5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
 - 6.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
 - 7.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
 -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문 의 처

02)6788-5106
